
(재)부천문화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이하 “연습공간” 이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연예술” 이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을 말한다.
- ② “연습공간” 이라 함은 공연연습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습공간과 부속공간을 말하며 세미나실, 휴게실을 포함한다.
- ③ “대관” 이라 함은 연습공간과 부속공간, 각종 장비 및 설비 등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대관사용자” 라 함은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범위)

- ①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내 대연습실1, 대연습실2, 중연습실1, 중연습실2, 세미나실
- ② 리허설 및 본 공연 연습을 위하여 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관의 종류)

정기대관 과 수시대관 으로 구분한다.

제5조(대관광고)

재단 홈페이지(www.bcf.or.kr)에 대관 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단의 필요에 따라 일간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대관 신청)

재단 홈페이지(www.bcf.or.kr)를 통해 ▶ 대관 안내 ▶ 공연예술연습공간 ▶ 대관절차 ▶ 신청서작성 ▶ 통합대관 시스템 사이트 접속 ▶ 대관 신청은 대관 사용일 5일 전까지 접수(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 ① 정기대관 신청을 허가(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대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심의위원 구성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작가, 작곡가, 감독, 연출가, 배우, 안무자, 지휘자, 스태프 등 공동·협력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정기대관은 상. 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며, 접수기간 동안 신청 접수하여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8조(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 ① 공연예술분야 민간단체(개인)에 한하여 대관
- ② 공연법 제2조 4항에 의거한 공연장(학교 내 공연장 제외)에서 공연한 경력이 있는 단체(개인) 또는 전공자에 한하여 대관
- ③ 단체 및 개인 간의 신청기간 경합 된 경우에는 부천시민을 우선한다.
 1. 1순위 : 정기대관[공연예술분야 민간단체(개인)]
 2. 2순위 : 정기대관(재단, 부천시 및 유관기관)
 3. 3순위 : 수시대관[공연예술분야 민간단체(개인)]
- ④ 대관 기관
 1. 정기대관은 연 2회 이상 일정 기간 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 후 대관 심의를 거쳐 결정
- 연 2회 이상 개최 필수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접수
- ⑤ 심의 및 기준

정기대관 심의 기준은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아래 사항은 필수 조건임

1. 대관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탈북예술단체(단체 및 일부)일 경우 우대하고 「별지2호」에 따라 신청

2. 내부대관 대상이 공간 사용 요청 시 우선 사용토록 협조

- 다양한 공연예술분야 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1단체(개인)당 연간 최대 100일 이상 사용 제한

- 위원회와 협의하에 연간 제한 일수 조정 가능

- 문체부 및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추진 목적 공간 사용 요청 시 의무 사용토록 협조

⑥ 일정 경합 시 결정 기준

1. 공연 목적이 공연예술인 경우

2. 대관 일정 및 그에 상응하는 연습실 수용 규모가 적합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신청인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⑦ 수시대관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른 자체 심의에 의한다.

제9조(대관 승인)

① 재단은 대관 신청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7일 이내 통보한다.

② 재단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신청인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의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단, 우선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대관 신청 제한)

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① 연습공간시설 및 재단시설을 심각히 훼손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재단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공연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관련의 연습인 경우

③ 상업적 목적으로 단체(개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연습 등인 경우

⑤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⑥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⑦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기타 법률적,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⑧ 연습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

⑨ 사전 통보 없이 대관 신청 후 2회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력이 있는 경우

⑩ 그 밖에 재단이 부적절하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 : 동아리, 학생 발표회, 공개 오디션 등)

제11조(대관 승인 취소)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재단 대관 승인 후, 대관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②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③ 연습공간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④ 대관자가 본 규정을 성실이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⑤ 본 지침을 위반할 경우

제12조(대관사용제한)

재단은 대관 이용 중이거나 이용 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소 1년 이상부터 무기한 대관 사용을 제한한다.

- ① 본 운영지침 및 대관 사용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도 대관이 제한될 수 있다)
- ② 제10조, 제11조 각호에 인정되게 사용한 경우

제13조(이의신청)

재단은 대관사용 제한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개인)는 「별지4호」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서는 연습공간 운영 담당자에게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3.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다.
4. 심의 결과는 15일 이내 해당 단체(개인)에게 통보한다.

제14조(대관 신청)

- ① 재단은 제15조 3항의 기한 내에 사용자가 사용료 미입금 시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정기·수시 대관은 「별지1호」양식으로 신청한다.

제15조(대관료)

재단은 대관료를 다음과 같이 「연습실별 대관료」에 의거 산출한다.

- ① 연습실 대관료 : 공연예술분야를 위하여 연습, 리허설 등 기본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기본 대관료로 산정한다.
- ② 부대시설 사용료 : 연습실 내부에 자체에 있는 부대설비는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
- ③ 대관료는 대관 신청일 기준 3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기대관은 신청 첫 번째 이용일 3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반환)

재단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단, 사용자는 「별지3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일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② 사용일 1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③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 ④ 사용일 7일 이내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
- ⑤ 연습공간 이용에 관하여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단은 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법인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일정에 대한 환불은 사용료 반환 기준에 의거 환불한다.

제17조(사용료감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내·외부 유관 기관 모두 사전 협의 후 공문 접수를 해야 한다.

- ① 전액감면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관련 프로그램
 2. 재단 기획사업 및 유관기관 내부 대관 요청 시 목적에 따른 자체 심의 후 감면
- ② 사용료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예술인·탈북예술인이 포함된 단체
 2. 지원내용

구 분		단체원 전원이 대상자일 경우	단체원의 일부만 대상자일 경우	구비 서류
단체	장애예술인	대관료 50% 할인	대관료 3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탈북예술인			

- 대관 신청 시 해당 사항 명시
- 대관료 납부 후 사용 당일 할인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할인을만큼 환불 처리됨

제18조(시설 사용시간 및 휴관일)

시설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대관운영시간

구 분	오 전	오 후	야 간
운영시간	10:00~13:00	14:00~17:00	18:00~22:00

② 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일,월요일 및 공휴일
2. 시설점검, 보수공사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운영 관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

③ 연습실 사용료

공간구분	대관료 구분(VAT 포함)			
	오전 (10:00~13:00)	오후 (14:00~17:00)	저녁 (18:00~22:00)	전일 (10:00~22:00)
대연습실1	2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대연습실2				
중연습실1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중연습실2				
세미나실	무료사용(단, 대관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			

제19조(권리양도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재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사용 허가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연습실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대관자가 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연습실 내 전기, 전열기구는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한다.
- ② 연습실 내 구비 된 시설 외 외부조명, 음향, 특수 효과 등 사용을 제한한다.
- ③ 대관자(사용자)는 입퇴실시 보안키 ‘관리대장’에 대여·반납 현황을 기재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대관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 ④ 공용 비품(마이크,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기기, 빔프로젝터 등) 사용을 희망할 경우 희망 일자 5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미리 예약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연습실 내부 음주와 흡연,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일체 금지 한다.
(텀블러 등 뚜껑이 있는 물병에 담긴 생수의 경우 연습공간 내부에서 반입이 가능하지만, 음료를 포함한 이외의 음식은 휴게실에서만 섭취 가능하다.)
- ⑥ 연습공간 내에서의 분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⑦ 대관단체의 대표자는 대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대관 중 연습공간에 부재 시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승인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행사(정치·종교행사, 상행위 등)를 할 수 없다.
- ⑨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22조(재난상황)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은 제한할 수 있으며 연습실 인원 및 대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대관 신청서

 해당사항에 표시

단체명				연습구분	<input type="checkbox"/> 공연 연습
					<input type="checkbox"/> 역량강화연습
연습명				사용인원	명
대관일자	년 월 일(요일) ~ 년 월 일(요일) (총 일 / 회)				
이용시간	<input type="checkbox"/> 오전 (10~13시)	<input type="checkbox"/> 오후 (14~17시)	<input type="checkbox"/> 저녁 (18~22시)	<input type="checkbox"/> 1일 (10~22시)	
	해당 날짜 입력	해당 날짜 입력	해당 날짜 입력	해당 날짜 입력	
대관장소	<input type="checkbox"/> 대연습실1	<input type="checkbox"/> 대연습실2	<input type="checkbox"/> 중연습실1	<input type="checkbox"/> 중연습실2	
장르명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연극	<input type="checkbox"/> 클래식음악	<input type="checkbox"/> 전통예술	<input type="checkbox"/> 오페라
	<input type="checkbox"/> 뮤지컬	<input type="checkbox"/> 복합장르	<input type="checkbox"/> 대중음악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특이사항	필요 장비, 반입 장비 등				
사물함 사용	<input type="checkbox"/> 희망		악기보관실 사용	<input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비희망 (기존 사용의 경우 사용중인 사물함 번호 작성)			<input type="checkbox"/> 비희망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할인대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예술가(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탈북예술가(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확정된 공연이 있을 경우 필수 작성

공연명				공연장르	
공연일시				공연장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에 의한 수집 및 이용 정보자료 범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기 및 수시대관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지원단체 관계자와의 정보전달 및 연락에 이용
2. 수집대상범위
 -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대관 관련 제반사항 등
3. 개인정보 등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할 경우 대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	---------------------------------

위와 같이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서명 필수

(재)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단체 프로필 및 소개

연습 상세 내용

과거 공연활동 이력 (최근 3년 이내 공연실적 사진파일 첨부 필수)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사용 지침에 관한 서약서

1. 대관자(사용자)는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관 시간에는 연습의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며 대관 입·퇴실 시간을 준수하며 신청한 공간 외의 타 연습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습공간명	비품현황
대연습실1	보면대 40개, 연주용의자 45개, 베이스의자 2개, 이동형의자 24개, 음향기기, 그랜드피아노, 전면거울 및 무용바
대연습실2	보면대 45개, 연주용의자 50개, 베이스의자 2개, 그랜드피아노, 전면거울 및 무용바, 음향기기
중연습실1	보면대 20개, 연주용의자 15개, 이동형의자 15개, 베이스의자 1개, 음향기기, 업라이트피아노, 전면거울 및 무용바
중연습실2	보면대 10개, 이동형의자 10개, 음향기기, 업라이트피아노, 전면거울 및 무용바

3. 대관자(사용자)는 연습공간(연습공간,악기보관실,사물함) 사용 시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키 '관리대장'에 대여·반납현황 기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정기대관 단체에 한해 악기보관실 및 사물함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키 '관리대장'에 대여·반납 현황 기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가 기간내에 문화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 "사용자" 가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합니다.
5. 공용 비품(마이크,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기기, 빔프로젝터 등) 사용을 희망할 경우 희망 일자 5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미리 예약 후,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용 비품 '관리대장'에 대여·반납현황 기재 후 사용 가능합니다.
6. 각 연습실 비품이 부족할 경우, 대관 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며 특별한 설비를 반입, 이동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공간의 청결 유지 및 질서를 위해 연습공간 내부에서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일체 금한다. (텀블러 등 뚜껑이 있는 물병에 담긴 생수의 경우 연습공간 내부에서 반입이 가능하지만, 음료를 포함한 이외의 음식은 휴게실에서만 섭취 가능)
8. 대관 당일 세미나실의 사용이 무료로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하루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예약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공간 사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인원 수 제한에 따른 공간의 규정을 따라야하며,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공간별 최대수용인원

구 분	대연습실1	대연습실2	중연습실1	중연습실2	세미나실
최대수용인원	50~60명	40~50명	30명	20명	8명

위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서명 필수**

(재)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단체 프로필 및 소개

연습 상세 내용

과거 공연활동 이력 (최근 3년 이내 공연실적 사진파일 첨부 필수)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사용 지침에 관한 서약서

1. 대관자(사용자)는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관 시간에는 연습의 준비 및 철수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며 대관 입·퇴실 시간을 준수하며 신청한 공간 외의 타 연습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습공간명	비품현황
대연습실1	보면대 40개, 연주용의자 45개, 베이스의자 2개, 이동형의자 24개, 음향기기, 그랜드피아노, 전면거울 및 무용바
대연습실2	보면대 45개, 연주용의자 50개, 베이스의자 2개, 그랜드피아노, 전면거울 및 무용바, 음향기기
중연습실1	보면대 20개, 연주용의자 15개, 이동형의자 15개, 베이스의자 1개, 음향기기, 업라이트피아노, 전면거울 및 무용바
중연습실2	보면대 10개, 이동형의자 10개, 음향기기, 업라이트피아노, 전면거울 및 무용바

3. 대관자(사용자)는 연습공간(연습공간,악기보관실,사물함) 사용 시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키 '관리대장'에 대여·반납현황 기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정기대관 단체에 한해 악기보관실 및 사물함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키 '관리대장'에 대여·반납 현황 기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자가 기간내에 문화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 "사용자" 가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합니다.
5. 공용 비품(마이크,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기기, 빔프로젝터 등) 사용을 희망할 경우 희망 일자 5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미리 예약 후,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용 비품 '관리대장'에 대여·반납현황 기재 후 사용 가능합니다.
6. 각 연습실 비품이 부족할 경우, 대관 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며 특별한 설비를 반입, 이동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공간의 청결 유지 및 질서를 위해 연습공간 내부에서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일체 금한다. (텀블러 등 뚜껑이 있는 물병에 담긴 생수의 경우 연습공간 내부에서 반입이 가능하지만, 음료를 포함한 이외의 음식은 휴게실에서만 섭취 가능)
8. 대관 당일 세미나실의 사용이 무료로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하루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예약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공간 사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인원 수 제한에 따른 공간의 규정을 따라야하며,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공간별 최대수용인원

구 분	대연습실1	대연습실2	중연습실1	중연습실2	세미나실
최대수용인원	50~60명	40~50명	30명	20명	8명

위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서명 필수**

(재)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연연습공간 대관료 할인신청서

지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춘천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청주 <input type="checkbox"/> 부천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전주 <input type="checkbox"/> 창원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강진 <input type="checkbox"/> 원주 <input type="checkbox"/> 포항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금정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담양 <input type="checkbox"/> 영월 <input type="checkbox"/> 화성		
할인가분	<input type="checkbox"/> 장애예술가(단체) <input type="checkbox"/> 탈북예술가(단체)		
할인률	<input type="checkbox"/> 개인(단체) 전원 해당 50% 할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일부 해당 30% 할인		
신청자명		연락처	
대관장소			
대관일시	<input type="checkbox"/> 20 년 <input type="checkbox"/> 월 일 <input type="checkbox"/> 오전 <input type="checkbox"/> 오후 <input type="checkbox"/> 저녁 <input type="checkbox"/> 전일 <input type="checkbox"/>		
대관료		입금자명	
입금액		환불금액	
환불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은행명) <input type="checkbox"/> 이름 / 계좌번호 :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료 할인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 납부한 대관료를 확인하고 환불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관료 환불확인서

신청자명			
대관장소		대관일시	
대관료		입금액	
환불금액		환불방법	계좌입금

* 계좌입금을 통한 환불처리의 경우 환불신청 후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공연연습공간 대관료 환불신청서

지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춘천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청주 <input type="checkbox"/> 부천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전주 <input type="checkbox"/> 창원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강진 <input type="checkbox"/> 원주 <input type="checkbox"/> 포항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금정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담양 <input type="checkbox"/> 영월 <input type="checkbox"/> 화성		
신청자명		연락처	
대관장소			
대관일시	<input type="checkbox"/> 20 년 <input type="checkbox"/> 월 일 <input type="checkbox"/> 오전 <input type="checkbox"/> 오후 <input type="checkbox"/> 저녁 <input type="checkbox"/> 전일 <input type="checkbox"/>		
대관료	원	입금자명	
환불신청일	<input type="checkbox"/> 20 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input type="checkbox"/> 대관 15일 전 100% 환불 <input type="checkbox"/> 대관 7일 전 50% 환불 <input type="checkbox"/> 대관 6일 전 환불 불가		
환불금액	원		
취소사유			
환불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은행명) <input type="checkbox"/> 이름 / 계좌번호 :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료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 납부한 대관료를 확인하고 환불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관료 환불확인서

신청자명			
대관장소		대관일시	
환불금액		환불방법	

* 계좌입금을 통한 환불처리의 경우 환불신청 후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